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0.
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고명욱 의원 등 7명(도하석, 장호섭, 이선주, 김장관, 임미연, 서보영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
- 회부일자: 2023. 11. 3.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11. 20.)

2.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(안 제1조)
-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7조
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
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11. 13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 목적에서 공중화장실의 “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” 을 추가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교육을 필요할 경우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 - 안 제16조에서는 법령형식에 맞도록 일부용어를 수정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